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5. . . (제 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문화예술교육사 1급 자격의 취득 수요가 증대되었으나 1급 운영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도입되지 못했던바, 문화예술교육사 1급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자격 운영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교육사 1급과 2급의 교육기관에 대한 규정을 분리하고, 1급의 교육기관 지정기준을 명시함(시행령 제17조제1항 신설,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변경)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 : 2025.04.02. ~ 2025.05.12.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예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중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하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라 한다)”를 “문화예술교육사 2급의 교육기관(이하 “2급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에 따라”를 “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1급의 교육기관(이하 “1급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갖추고 있을 것
2.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원의 전문인력(교육과정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갖추는 것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지정 등) <신설>	제17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지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1급의 교육기관(이하 “1급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갖추고 있을 것 2.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 조직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원의 전문 인력(교육과정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갖추는 것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② ----- 문화예술교육사 2급의 교육기관(이하 “2급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하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생략)	② ----- 문화예술교육사 2급의 교육기관(이하 “2급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 -----.

3. (생략) 4. (생략) ②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④ ----- ----- ----- ----- -----. ⑤ 제4항에 ----- -----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연 락 처	(044) 203 - 2762